



인권센터 규정

규정번호	3-1-21
제정일자	2022.03.31.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족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당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교구성원”이란 본교의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 칙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상담 및 조사업무를 위한 전문상담사와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자문위원) 센터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홍보 및 연구
2. 인권침해 등의 상담, 신고 및 민원접수
3.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상담실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학생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1조(신고 접수) ① 인권침해 사유가 발생할 시 피해자나 신고인은 서면·구두·전자매체 등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1조 제4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 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 ③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5조(조사방법) ① 센터장 및 위원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학과 및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처리)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② 센터장은 당사자 간 화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건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회부하지 아니한다.

- ③ 센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제17조(구제조치 등) 센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나 직권조사에 따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신고인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2. 당사자의 소속부서의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등 의견표명
3.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이 반성 할 수 있는 조치
4.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재 심의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제척, 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 보호) ①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 등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인권침해 등 관련사건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